

국제엠네스티의 합의된 성매매의 비범죄화 전략

허경미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며

2015년 8월 11일에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살리 쉐티(Salil Shetty)는 국제대의원총회 연설을 통해 성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경우 차별, 폭력 및 학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그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투표를 통하여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 대표들은 투표를 통해 국제엠네스티의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Policy to Protect Human Rights of Sex Workers) 개발계획을 승인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¹⁾

그리고 이 결의안의 후속적인 조치로 2016년 5월 26일 국제엠네스티는 「성 노동자의 인권 존중, 보호 및 실천을 위한 국가의무에 관한 국제엠네스티 정책」(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을 발표하였다.²⁾

국제엠네스티의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이즈바이러스(HIV/AIDS)에 관한 공동 유엔프로그램(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 and AIDS: UNAIDS), 건강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등의 다양한 유엔 산하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결과이기도 하다.

1 결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경우 차별, 폭력 및 학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성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정책을 채택하는 길을 열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다. 회원국은 합의된 성 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성 노동자들이 착취, 인신매매 및 폭력으로부터 완전하고 평등한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Amnesty International, Global movement votes to adopt policy to protect human rights of sex workers,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5/08/global-movement-votes-to-adopt-policy-to-protect-human-rights-of-sex-workers/> 2019. 7. 5. 검색.

2 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POL3040622016ENGLISH.PDF>. 2019. 7. 5. 검색. 이를 줄여서 여기서는 국제엠네스티의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매일경제, 엠네스티, 논란 속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 공식채택, 2016. 5. 26.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5/379098/> 2019. 7. 5. 검색.; 박지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민주법학, 2016, 60: 273-307.

또한 국제엠네스티가 아르헨티나, 홍콩,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의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 및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권고문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³⁾

나아가 이 결의안은 성 노동자그룹, 성매매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 성매매폐지주의단체(Abolitionist Organizations), 페미니스트 및 기타 여성권리대표, 성적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LGBTI)단체, 인신매매방지단체 및 HIV/에이즈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추진되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성적 착취를 포함한 인신매매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의된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으로서의 전환태도를 명확히 보였다.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엠네스티의 회원국 정부가 성매매 정책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엠네스티의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은 이른바 노르딕모델(Nordic Model), 즉, 성구매자 처벌 및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는 유엔 및 유럽연합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⁵⁾ 따라서 국제엠네스티의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에서 정의된 용어의 정의 및 회원국 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의 용어 정의

국제엠네스티의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은 성구매자처벌법을 바탕으로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비범죄화함으로써 처벌을 면제하는 노르딕모델 국가의 대응방식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를 먼저 제시하였다.⁶⁾

3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의 실태를 오랫동안 조사해왔다. 우간다의 성매매 여성의 성폭력피해 거부사안에 대한 조사보고서(2010), 그리스의 HIV보균 성 노동자의 범죄화 및 낙인찍기에 대한 조사보고서(2012), 나이지리아의 성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 조사보고서(2014), 온두라스의 성 노동자 대상 살인사건 긴급조치 조사 보고서(2014), 브라질 경찰의 성 노동자 퇴거 및 학대에 대한 긴급조치 조사보고서(2014), 튀니지의 성 노동자 성적 착취, 협박 및 강탈에 대한 조사보고서(2015) 등이 대표적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s policy and research on protection of sex workers' rights, 2016. 5. 26.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6/05/amnesty-international-publishes-policy-and-research-on-protection-of-sex-workers-rights/> 2019. 7. 5. 검색.

4 박정미, 성매매의 세계화와 페미니즘 정치: 초국적 성매매에 관한 연구, 논쟁, 운동. 페미니즘 연구, 2017, 17.1: 265-298.; 주간경향, 성매매 비범죄화' 불 지핀 국제엠네스티, 2015. 8. 2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1508181120581/> 2019. 7. 5. 검색.

5 허경미,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 경찰학논총, 2019, 14.2: 33-61.; 한겨레, 국제엠네스티 "성매매, 범죄로 보지 말라" 권고에 국내 인권·여성단체 논란, 2015. 8. 1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04691.html#csidx6857b97d7dbbbb28f754b9ce6e99efa/ 2019. 7. 5. 검색.; The Guardian, Amnesty International in global programme to decriminalise sex work, 2016. 5. 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may/26/amnesty-international-decriminalise-sex-work-prostitution-human-rights/> 2019. 7. 5. 검색.

6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3-5.

1. 성 노동과 성 노동자, 합의

성 노동(Sex Work)이란 성인 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성구매자에게 성판매자가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를 말하며,⁷⁾ 성 노동자(Sex Worker)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⁸⁾

합의(Consent)란 특정 성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의를 의미하며, 동의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간의 합의는 국제엠네스티가 성 노동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며, 성매매와 인신매매, 성 착취, 성폭력 및 성에 기반한 폭력을 구별하는 전제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⁹⁾

2. 범죄화, 처벌

성인 간 합의된 성매매(Consensual Adult Sex Work)의 범죄화 및 처벌을 금지하며, 합의된 성 관련 구매, 판매, 영업조직 등의 범죄화 및 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화(Criminalization)란 합의된 성매매를 금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정책적 방향을 말한다.

합의된 성인 간 성매매의 범죄화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성인 간 합의된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 노동자를 처벌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성매매의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포주행위나 성매매영업장 제공 등의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은 성 노동자들의 영업적 행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행위까지를 처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셋째는 성인 간 합의된 성매매의 성 구매행위(Buying of Sex)를 처벌하는 경우이다.

처벌(Penalization)이란 합의된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임에도 양 당사자를 처벌하고, 성판매자에 대해 추방, 양육권 박탈, 사회복지혜택 감소, 재활구금 등 일련의 사회복지적, 형사사법적 서비스 제공의 차별화를 꾀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3. 인신매매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정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 억제 및 처벌하기 위한 유엔 의정서 2000」(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7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Russian Federation, UN Doc. CEDAW/C/RUS/CO/8, 2015, paras. 25–26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repeal the pro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de which penalizes prostitution and to establish an oversight mechanism to monitor violence against women involved in prostitution including by the police).

8 국제엠네스티는 성 노동과 성 노동자란 용어가 상황 및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질 수 있고, 또한 성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국제엠네스티는 일반적으로 성 노동과 성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어린이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5. 4.

9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5. 5.

Children 2000) 상의 정의를 준용한다.¹⁰⁾

즉, 인신매매란 사람을 착취하기 위하여 위협 또는 강제력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또는 취약 계층의 위치, 대가, 보호자의 동의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감금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¹¹⁾

III 회원국가의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상 의무

1. 성 노동자의 성매매 진입단계상 의무

국제엠네스티는 회원국의 정부가 성 노동에 진입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마련해야 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는 성 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기구 등의 지원, 그리고 차별적인 관행 등을 타파하고 성 노동이 생존 그 자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직업교육제도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²⁾

첫째, 성 노동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성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인권기준과 사회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법률 및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여 누구도 생존수단으로 성 노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성매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성 노동자가 인신매매에 연계되지 않도록 하며, 성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집행한다.

넷째, 소외된 개인과 집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 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존중하며, 적절한 교육 옵션과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인권보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선택하여 인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외된 계층에게 행해지는 차별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성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고용차별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불평등과 차별을 낫고, 영속시키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4.

11 UN Trafficking Protocol, 2000, Art. 3(a).

12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8-9.

2. 성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타파 의무

국제엠네스티는 회원국의 정부가 성 노동자 및 그 가족 등이 사회적 낙인 및 비난, 차별 등에 직면하지 않도록 취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성 노동을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과 차별적 대우의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³⁾

첫째, 성 노동자 및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근절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성 노동자와 그 가족이 법률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고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유해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법집행 공무원들은 성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성 노동자가 법적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성 노동자들이 건강, 주택,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나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성 노동자들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단한다.

3. 성 노동자에 대한 범죄화 및 처벌 중단 의무

국제엠네스티는 회원국의 정부가 성 노동을 범죄화(Criminalization)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결국 성 노동자가 범죄인으로 전락하고 이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 그리고 인권침해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획일적인 성매매 금지 및 그 처벌법을 폐지하여야 하며,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적인 성매매 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⁴⁾

첫째, 대가를 지불하는 성인 간의 합의된 성적 서비스(Consensual Exchange of Sexual Services)를 직접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범죄 또는 처벌하는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성 노동에 적용되는 성 노동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성적 착취나 강요된 성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법은 모든 성매매를 폭력 또는 착취된 성행위로 규정하거나 성 노동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성 노동자의 이주, 배회, 이민 등에 대해 관련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13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9.

14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1.

넷째, 성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고 정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노동, 보건, 안전 및 기타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4. 성 노동자의 신체적 및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국제엠네스티는 회원국의 정부가 성 노동자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폭행이나 성적 폭력(Physical and Sexual Violence)을 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⁵⁾

첫째, 성 노동자들이 강간 및 성폭력, 권력남용, 폭행, 강탈 및 기타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평등한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처벌은 차별이 없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의 기준은 항상 인권적 개념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또 정비되어야 한다.¹⁶⁾

셋째,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집행공무원과 건강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착취로부터의 성 노동자 보호

국제엠네스티는 회원국의 정부가 성 노동자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착취(Exploitation)를 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⁷⁾

첫째, 모든 사업 또는 고용 현장에 적용되는 일반법(General Laws)이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 노동을 규제할 수 있다.¹⁸⁾

둘째, 성 노동자들이 인신매매를 구성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착취로부터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성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성폭력, 권위의 남용, 강제노동 등의 착취행위에 대해 특별법 또는 기존의 일반법을 통해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률은 모든 성행위를 폭력 또는 착취와 연관시키거나 성 노동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를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5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2-13.

16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and Grover (UN Doc. A/HRC/14/20), 2010; CESCR, General Comment 22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rticle 12)), (UN Doc. E/C.12/GC/22), 2016, para. 32. The CEDAW Committee has expressed concern to one state party about "widespread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prostitution, in particular by the police."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Kyrgyzstan, (UN Doc. CEDAW/C/KGZ/CO/4), 2015, para. 21(c).

17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3.

18 다만, 국제엠네스티는 특정한 국가가 성 노동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범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3.

셋째, 인신매매를 예방, 억제 및 처벌하는 국제법¹⁹⁾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를 형사적 범죄로 규정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성 노동의 비범죄화 및 노동조합 인정

국제앰네스티는 성 노동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가 성 노동에 대한 규제(Regulation)를 모두 없애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가는 성 노동을 모두 범죄시하는 법적 태도에서 벗어나 착취와 학대로부터 성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⁰⁾ 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규제 체제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 노동자의 인권 및 안전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 체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 성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성 노동자들이 단합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Unions)을 결성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7. 탈 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는 빈곤이나 차별로 인해 성 노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며, 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이직을 희망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¹⁾

첫째, 성 노동자가 국가 혜택, 교육 및 훈련 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고용(Freely Chosen Alternative Employment)²²⁾ 등에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지원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성 노동자들에게 재활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s)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넷째, 착취(Exploitation) 피해경험이 있는 성 노동자에게 적합한 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성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범죄기록 또는 고용기록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성 노동자 기록이 차별적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 UN Trafficking Protocol, Article 5.

20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5.

21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16.

22 성 노동에 벗어나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경제현장에서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차별적인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혁하고, 젠더 고정관념, 엄격한 성역할(Rigid Gender Roles) 및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용현장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처하여야 한다.²³⁾

일곱째, 성적 소수자(Gender Non-Conforming)²⁴⁾에 대한 스티그마(Stigma)와 교육 및 노동기회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며, 국가 또는 시민들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에 대응해야 하며, 성적 소수자 처벌을 이끄는 성적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IV 나가며

2015년 8월 11일에 국제엠네스티 대의원총회에서 「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정책」(Policy to protect human right of sex workers) 개발계획 승인 및 2016년 5월 26일 국제엠네스티의 「성 노동자의 인권 존중, 보호 및 실천을 위한 국가의무에 관한 국제엠네스티 정책」(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의 핵심 내용은 국제엠네스티의 회원국가들은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추구하고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합의된 성매매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② 대가를 지불하는 합의된 성적 서비스(Consensual Provision of Sexual Services) 및 성 노동, 성 노동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③ 성적 착취, 인신매매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④ 합의된 성인 간 성매매를 성 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성판매자를 성 노동자로 규정하였다. ⑤ 합의된 성매매의 성 노동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⑥ 인신매매, 성적 착취로부터 성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⑦ 성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⑧ 성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의 보호 및 치료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⑨ 탈 성 노동자에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였다. ⑩ 탈 성 노동자의 직업선택 및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 성 노동 기록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적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⑪ 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에는 성 노동자 및 지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⑫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및 처벌, 인권의 정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 억제 및 처벌하기 위한 유엔의정서 2000」(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상의 개념을 전제로 하며, 이 의정서에 준해 인권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23 Cedaw Committee, General Recommendation 28, Un Doc. Cedaw/C/Gc/28, Para. 22; Cedaw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Greece, Un Doc. Cedaw/C/Grc/Co/7 (26 March 2013), Para. 29(B); Cedaw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Turkmenistan, Un Doc. Cedaw/C/Tkm/Co/3-4 (9 November 2012), Para. 33(C).

24 학계 및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적 소수자로 번역한다.

참고문헌

- 매일경제, 앰네스티, 논란 속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 공식채택, 2016. 5. 26.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5/379098/> 2019. 7. 5. 검색.
- 박지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민주법학, 2016, 60: 273-307.
- 주간경향, 성매매 비범죄화' 불 지핀 국제앰네스티, 2015. 8. 2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1508181120581/> 2019. 7. 5. 검색.
- 박정미. 성매매의 세계화와 페미니즘 정치: 초국적 성매매에 관한 연구, 논쟁, 운동. 페미니즘 연구, 2017, 17.1: 265-298.
- 한겨레, 국제앰네스티 “성매매, 범죄로 보지 말라” 권고에 국내 인권·여성단체 논란, 2015. 8. 16.
- 허경미.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 경찰학논총, 2019, 14.2: 33-6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04691.html#csidx6857b97d7dbbbb28f754b9ce6e99efa/ 2019. 7. 5. 검색.
- Amnesty International, Global movement votes to adopt policy to protect human rights of sex workers,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5/08/global-movement-votes-to-adopt-policy-to-protect-human-rights-of-sex-workers/> 2019. 7. 5. 검색
-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s policy and research on protection of sex workers' rights, 2016. 5. 26.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6/05/amnesty-international-publishes-policy-and-research-on-protection-of-sex-workers-rights/> 2019. 7. 5. 검색.
-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POL 30/4062/2016 26 May 2016
-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Russian Federation, UN Doc. CEDAW/C/RUS/CO/8, 2015.
- The Guardian, Amnesty International in global programme to decriminalise sex work, 2016. 5. 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may/26/amnesty-international-decriminalise-sex-work-prostitution-human-rights/> 2019. 7. 5. 검색.